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2404.13)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계약번호	52429482580000
계약자	(이름) 제천한방주야간보호센터 (706-80-01749) (주소) (사업장)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26길 21 (신월동)
보험기간	2024.08.02 ~ 2029.08.02 (5년)
청약일	2024.08.02
1회 보험료	300,000원(월납)[기본:24,479원 + 특약:184,611원 + 적립:90,910원]

보장내용 건물(1/1)

구분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담보별 보장내용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Ⅰ(대물 1사고당)	5년납 5년만기	10억원	1,659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을 불문함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1억5,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을 불문함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Ⅲ(부상 1인당)		3,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을 불문함
화재손해(건물(실손))	5년납 5년만기	1억3,000만원	21,190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 및 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화재손해(시설및집기비품(실손))	5년납 5년만기	1,000만원	1,630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 및 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Ⅰ(1사고당)	5년납 5년만기	3억원	44,058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Ⅱ(1인당)		3,000만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공제]자기부담금(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Ⅱ)		100만원		※ 1사고당 가입시 선택한 자기부담금
노인요양시설종업원신체피해배상책임Ⅱ(1사고당)	5년납 5년만기	3억원	2,982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종업원(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노인요양시설종업원신체피해배상책임Ⅲ(1인당)		3,000만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종업원(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공제]자기부담금(노인요양시설종업원신체피해배상책임Ⅲ)		100만원		※ 1사고당 가입시 선택한 자기부담금
노인요양시설전문인배상책임Ⅱ	5년납 5년만기	1억원	137,571	피보험자가 사회복지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공제]자기부담금(노인요양시설전문인배상책임Ⅱ)		100만원		※ 1사고당 가입시 선택한 자기부담금

담당RC : 중부GA.충북3지점 보험대리점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김민지)
담당RC 연락처 : 043-716-0153 / 010-2220-5534 / 협회등록번호: 20000371040009
증권작성일 : 2024-08-03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발행번호: 24284681-00002385-0202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2404.13)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계약번호	52429482580000
계약자	(이름) 제천한방주야간보호센터 (706-80-01749)
	(주소) (사업장)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26길 21 (신월동)
보험기간	2024.08.02 ~ 2029.08.02 (5년)
청약일	2024.08.02
1회 보험료	300,000원(월납)[기본:24,479원 + 특약:184,611원 + 적립:90,910원]

◆ 이 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피보험대상

보장사항

구분	내용	구분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건물(1/1)		[기본]			
상품판매형	실손보상형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대물 1사고당)	5년납 5년만기	10억원	1,659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제천한방주야간보호센터 (706-80-01749)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1억5,000만원	
소재지	27157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26길 21 (신월동, 한방주야간보호센터)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부상 1인당)		3,000만원	
목적물업종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등)	화재손해(건물(실손))	5년납 5년만기	1억3,000만원	21,190
요율적용업종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등)	화재손해(시설및집기비품(실손))	5년납 5년만기	1,000만원	1,630
수용장소	증권상 표기된 건물내 분산수용함, 한방주야간보호센터-목적물	[특약]			
총별업종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등)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Ⅱ(1사고당)	5년납 5년만기	3억원	44,058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소	(사업장) 27157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26길 21 (신월동)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Ⅱ(1인당)		3,000만원	
건물구조급수	3급	[공제]자기부담금(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Ⅱ)		100만원	
건물구조	철골조/판넬층/콘크리트외벽	노인요양시설종업원신체피해배상책임Ⅱ(1사고당)	5년납 5년만기	3억원	2,982
가입면적 (㎡)	210	노인요양시설종업원신체피해배상책임Ⅱ(1인당)		3,000만원	
층수(지상)	2	[공제]자기부담금(노인요양시설종업원신체피해배상책임Ⅱ)		100만원	
층수(지하)	0	노인요양시설전문인배상책임Ⅱ	5년납 5년만기	1억원	137,571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부담보특약	선택 안함	[공제]자기부담금(노인요양시설전문인배상책임Ⅱ)		100만원	
화재손해부담보특약	선택 안함				
특수건물여부	선택 안함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대상여부	선택 안함				
복합구조건물대상여부	선택 안함				
요양시설업종구분코드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수용정원수	0000000021				
만기(중도)금 수익자	계약자본인				

- ◆ 보험증권은 계약체결의 증거로 발행되는 것이며, 실제 계약내용은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 ◆ 이 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청약서 주요 내용 작성시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않았거나 자필 서명을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실손(보상)이란, 교체비용이나 수리복구비용을 감가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이라도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전액을 지급하는 상품(담보)을 말합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액보다 많은 경우, 보험가입액을 한도로 함)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